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0가합7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한승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지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4,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인터넷 접속 등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D관광호텔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 2건의 서비스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인터넷 6회선, IPTV 39대, 인터넷 전화 39대에 대한 사용계약임,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현재 모두 종료되었다.

2017. 8. 21. 인터넷(오피스넷) 6회선, IPTV(기업TV) 38대에 관한 서비스 사용계약이 체결되고
2018. 2. 28.부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됨 ⇨ 2018. 9. 7. 원고의 요청에 따라 IPTV 1대가 추가 제공
됨 ⇨ 2021. 3. 1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6회선, IPTV 39대의 서비스 사용계약이 해지됨
2018. 5.경 인터넷 전화(기업070) 39대에 관한 서비스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2018. 5. 24.부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됨 ⇨ 2021. 5. 25. 사용기간 만료로 해지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IPTV 39대, 인터넷 전화 39대를 설치하였으나 그중 각 5대는 원고가 지정하지도 않은 장소에 설치되었다.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5곳은 원고가 IPTV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장소이다(피고가 임의로 장비를 설치한 5곳에 대해, 원고는 소장에서는 "린넨실, 놀이방, 당직실, 당직실 진열장 서랍안, 경비실"이라고 주장하고, 2021. 4. 27.자 준비서면에서는 "린넨창고, 2층 수영장 놀이기구 창고, 야간수면실 2대, 주차장 창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위 장소에 IPTV와 인터넷 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각 5대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불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후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2018. 2. 28.부터 2020. 7.까지의 위 각 5대 분의 사용료 2,433,3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IPTV와 인터넷 전화 각 5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호텔 린넨실에 임의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장비가 설치된 D관광호텔은 원고가 운영하는 곳인바, 원고가 알려주지 않는 한 피고로서는 호텔의 내부구조나 각 호실의 용도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면서 굳이 원고가 요청하지도 않은 장소에 이 사건 장비를 임의로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각 공문(갑 제3호증)에 따르더라도 ‘39대중 34대만 사용하고 나머지 5대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사용요금을 환불해달라’는 것이지,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5곳의 장소에 장비를 임의로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장비를 철거하고 사용요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계속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였다고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철거해야 하고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기간 만료 전에 원고가 철거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18. 5. 16. 피고 측 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 4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행남, 판사 이윤규, 판사 이나리